

학 칙

(2018. 07. 06. 시행)

구 미 대 학 교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우리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 이념에 입각하여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우리대학은 구미대학교라 한다.(2012. 6. 25. 개정)

제3조(위치) 우리대학은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37에 둔다.(2014. 2. 28. 개정)

제4조(설치학부,학과 및 입학정원) ① 우리대학에 개설된 학부,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별도 입학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2018. 07. 06. 개정)

모집단위		주간	야간
전자컴퓨터공학부		120	-
전기에너지과		50	10
소방안전과		40	-
기계·자동차공학부		130	10
비주얼게임컨텐츠스쿨		40	-
조경과		15	-
군사 협약학부	특수건설기계과	120	-
	국방환경화학과	30	-
	국방의료과	40	-
항공학부	헬기정비과	40	-
	항공정비과	80	-
	항공전자정비과	40	-
산업경영학부		70	10
간호보건학부	치위생과	51	-
	작업치료과	30	-
	물리치료과	40	-
	보건의료행정과	25	-
	간호학과	179	-
언어치료과		26	-
건강뷰티학부		90	-
호텔관광항공조리학부		130	10
사회복지과		51	5
유아교육과		80	-
합 계		1,517	4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 이외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입학할 수 있다.(2017. 02. 28. 신설)

- 제4조의2(학과 및 전공의 폐지)** ① 학과의 신규개설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계열·학과의 통·폐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1. 12. 12. 개정)(2018. 02. 28. 개정)
-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입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 시 타 학과 및 전공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2011. 12. 12. 개정)
- ③ 폐지된 학과 및 전공으로의 복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타 학과 및 전공으로의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2011. 12. 12. 개정)
- ④ 소속 학과 및 전공의 폐지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교원으로 소속 학생이 없는 경우 제1항에 의하여 학과 및 전공폐지에 대한 세부사항(학과 및 전공폐지 소속 교원의 학과소속변경 절차 및 교양과목배정 절차)에 따른 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 학과 및 전공의 소속은 없이 구미대학교 교원으로 둔다.(2012. 6. 25. 개정)
- ⑤ 제반사항에 의거 학과 및 전공의 소속이 없는 구미대학교 교원의 경우 학과 및 전공의 폐지가 완료되거나, 다른 절차(학과소속변경 절차 및 교양과목배정 절차)에 의거 소속 학과 및 전공의 결정이 불가할 경우 당해교원은 면직한다.(2012. 6. 25. 개정)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제5조(수업연한)** ① 우리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3년 또는 4년으로 한다, 다만 3년과 4년으로 하는 경우는 교육부장관이 인가하는 학과로 한다.(2009. 5. 13. 개정)(2014. 12. 10. 개정)
- ②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또는 2년으로 하며, 전문학사학위과정 3년제 졸업자는 1년 이상, 2년제 졸업자는 2년 이상으로 한다.(2017. 02. 28. 신설)

제6조(재학연한) 우리대학의 재학연한에 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3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도)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2014. 12. 10. 개정)

제8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개학기로 나눈다.

제 1 학기 : 3월 1일 부터 8월 31일 까지

제 2 학기 : 9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말일 까지로 한다. 다만, 개강은 4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후에 할 수 있으며, 산업체위탁과정, 계약학과 등

산업체와 별도 협약을 통해 개설되는 과정은 개강일을 정규 과정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2015. 12. 23. 개정) (2016. 02. 22. 개정)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22조에 의거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에서 학기단위의 현장실습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4. 12. 10. 개정)

③ 하계 및 동계방학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기회 제공을 위하여 계절수업을 개설,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4. 12. 10. 신설)

제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2014. 12. 10. 개정)

- 하계방학
- 동계방학
- 일 요 일
- 법정공휴일

②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기간은 매학년도 학사일정에 따라 총장이 정하며, 필요시 휴업일에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2009. 5. 13. 개정) (2014. 12. 10. 개정)

③ 총장은 비상재해로 인한 급박한 사정의 발생 또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2014. 12. 10. 개정)

제10조의2(임시휴업 및 휴강) ① 총장은 비상재해 및 급박한 상황과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휴업 또는 휴강을 할 수 있다.(2010. 12. 01. 개정)

② 임시휴업 및 휴강 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0. 12. 01. 개정)

제 4 장 신 입 학

제11조(입학시기) 입학할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 1/3 이내로 한다.(2018. 02. 28. 개정)

제12조(입학자격) 우리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법령에 의하여 위의 각 호 해당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3조(입학지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입학원서에 총장이 정하는 관련서류(학교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추천서 등 총장이 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와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2009. 5. 13. 개정)

제14조(입학전형) ① 신입학자는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다음 각호 중 총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하되, 각 모집단위별로 면접성적을 반영할 수도 있다.(2009. 5. 13. 개정)

1. 대학수학 능력시험
2.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3. 면접고사
4. 실기고사
5. 적성검사
6. 신체검사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및 제40조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2009. 5. 13. 개정)

③ 입학전형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2. 6. 25. 개정)

제14조의2(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2012. 6. 25. 개정)(2014. 12. 10. 개정)

②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2. 6. 25. 개정)(2014. 12. 10. 개정)

제14조의3(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2014. 12. 10. 신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4. 12. 10. 신설)

제15조(입학허가)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2012. 6. 25. 개정)

제15조의2(이중학적의 금지) 삭제(2012. 12. 10. 삭제)

제 5 장 편입학·전과 및 재입학

제16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1개 학기(1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및 학점이 인정된 자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1/3선 이내에 해당 학년 또는 그 이하의 학기에 편입학 할 수 있다. (2018. 02. 28. 개정)

② 편입학은 대학의 전체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계열과 학년에 관계없이 결원 범위 내에서 입학할 수 있다.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언어재활과는 각 모집단위별 결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 학과별 편입학 지원자격 요건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17. 02. 01. 개정)

제16조의2(전과) ① 전과는 1학년 1학기 이후에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1/3 이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018. 02. 28. 개정)

② 전부(과)는 전입학과의 입학정원 20% 범위 내에서 재학기간 1회에 한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단, 간호학과, 치위생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언어재활과는 결원 범위내에서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다.(2011. 12. 12. 개정)(2014. 12. 10. 개정)(2017. 02. 01. 개정)

③ 전부(과)한 자는 소정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출과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을 전입학부(과)의 별도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2017. 02. 01. 개정)

④ 삭제

⑤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의3(학부모집 전공배정) ① 신입생 모집을 학부단위로 모집하는 경우 학부별 세부전공의 분리는 학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부터 운영할 수 있다.(2017. 02. 01 신설)

② 학부별 세부 전공단위 학사 운영을 위한 전공개설 최소 편성인원은 30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전공단위 개설 최소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2017. 02. 01 신설)

③ 전공배정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7. 02. 01 신설)

제17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신청할 경우 제적기간에 관계없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11. 12. 12. 개정) (2017. 02. 01개정)

② 재입학은 전체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학과(학과명칭 변경시 동일학과로 인정)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자퇴 또는 제적당시의 소속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는 폐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재입학 후 전과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 양성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결원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

가한다. (2011. 12. 12. 개정)(2017. 2. 01.개정)(2017. 02. 28.개정)

③ 재입학의 자격, 절차, 정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 재입학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3 이내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2008. 1. 10. 신설)(2018. 02. 28. 개정)

제18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 재학생, 복학생은 수업을 받기 위해 총장이 정한 기일 내에 수업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2009. 11. 2. 개정)

② 신입학자, 재입학자, 편입학자는 총장이 정한 기일내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기일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2009. 11. 2. 개정)

③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와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2014. 12. 10. 신설)

제 6 장 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제19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임신, 출산, 자녀양육, 창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2/3이상 수업에 참가 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2014. 12. 10. 개정) (2016. 08. 31. 개정)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휴학 기간은 일반휴학의 경우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 10. 개정)

④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2009. 5. 13. 개정)

⑤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생은 입학한 당해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13. 4. 19. 신설)

1. 군입대를 하는 경우

2. 종합병원 발급 5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1/3이상 출석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4. 부모학생의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과 여학생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하는 경우(2016. 08. 31. 신설)

⑥ 창업을 목적으로 휴학을 신청하는 자는 휴학원에 창업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대학은 창업교육센터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2014. 12. 10. 신설)

제19조의 2(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시 대학에서 정하는 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2008. 1. 10. 신설)

② 복학은 복학 신청학기 수업 2/3이상 참여가 가능한 경우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2008. 1. 10. 신설)(2017. 02. 01 개정)

제20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보호자 동의 포함)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9. 5. 13. 개정)(2014. 12. 10. 개정)

제21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제적처리 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이 4주간을 초과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4. 유급 또는 신체 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8. 등록금 분납제 신청자중 대학에서 정한 추가 분납일정에 해당 등록금 납입을 완료하지 못한 자(2010. 12. 01. 신설)
9. 산업체 위탁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 위탁 산업체를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고 산업체위탁 협약이 가능한 산업체로 재 취업을 하지 않는 자(2016. 08. 31. 신설)
10. 계약학과 입학생으로 재학 중 당초 계약학과 참여 산업체를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 또는 계약학과 과정의 학습을 포기한 자(2016. 08. 31. 신설)

제 7 장 교과 및 수업

제2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직업기초 교과목 포함), 전공교과, 교직교과 및 일반교과로 구분한다.(2013. 2. 28. 개정)(2014. 12. 10. 개정)(2017. 02. 28.개정)

②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대학 교육과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2009. 11. 2. 개정)(2014. 12. 10. 개정)

③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은 4주 이상의 계절제(하계/동계) 현장실습과 학기단위의 학기제현장실습로 구분하여 실시가능하며, 학점인정의 범위는 계절제 현장실습은 최대6학점이내, 학기단위 학기제 현장실습은 최대 18학점까지 개설 인정할 수 있다.(단,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 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2011. 12. 12. 개정) (2016. 08. 31. 개정)

- ④ 일반(일반선택)교과는 재학 중 소속이 다른 타 학과 및 전공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이를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2009. 11. 2. 신설)
- ⑤ (2015. 12. 23. 삭제)
- ⑥ 4년제 간호학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간호학과 운영규정에 따른다.(2014. 12. 10. 신설)

제22조의1(융합형 Cop학기제 운영) ① 대학의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융합형 Cop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융합형 Cop학기제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는 별도의 창의적 융합형 실용인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융합형 Cop학기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2012. 6. 25. 신설)

제22조의2(교육과정의 연계)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계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우리 대학에 입학을 원하는 경우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필요한 경우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9. 05. 13. 개정) (2017. 02. 28.개정)

④ 연계교육으로 이수한 과정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2017. 02. .신설)

⑤ 기타 교육과정 연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7. 02. 28.신설)

제22조의3(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국내외 타 대학과의 교류협정을 통해 공동으로 전문학사 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018. 02. 28. 개정)

제22조의4(외국대학의 복수 또는 공동학위과정 운영)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 대학간 복수 또는 공동학위 협정을 체결,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대학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 대학의 학위 수여가 가능한 복수 또는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011. 12. 12. 개정)

제22조의5(외국대학의 공동학위과정 운영) (2011. 12. 12. 삭제)

제22조의6(e-Military University과정의 운영) ① 국방부와 협약에 의해 부사관으로 복무중인 인원이 입학하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위한 e-Military University 과정이라 칭한다.(2010. 12. 01. 신설)

② e-Military University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e-Military University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과 대학 학사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2010. 12. 01. 신설)

제22조의7(고용예약형 Pre-job 프로그램 운영) ① 대학과 산업체가 상호 협약에 의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직무를 교육하여 협약 산업체에 취업 또는 채용 가산점을 부여하는 고용예약형 Pre-job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2014. 2. 28. 신설)

② 고용예약형 Pre-job 프로그램은 협약 산업체와 상호 협약에 의해 운영되며 각 협약 프로그램별 주관학과와 참여대상 학과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프로그램 주관학과와 참여대상 학과의 학생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수한 교과목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 졸업학점에 포함된다.(2014. 2. 28. 신설)

③ 기타 고용예약형 Pre-job 프로그램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2014. 2. 28. 신설)

제22조의8(사회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① 사회맞춤형학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고용예약 Pre-Job 프로그램에 준하여 운영하며, 장학금, 성적평가 및 출석관리 등은 사회맞춤형 참여 학과(프로그램) 별도로 결정한다.

② 사회맞춤형 학과의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은 채용연계 산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며, 참여 학생은 채용연계 산업체로 현장실습을 우선 배정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사회맞춤형 학과는 별도의 책임운영교수가 운영하며, 책임운영교수는 참여학생의 진로지도 및 경력관리, 취업지원 등 전반적인 학생지도 및 관리를 책임진다.(2017. 02. 01. 신설)

제22조의9(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운영) ① 국가기술자격법 10조에 따른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8. 02. 28. 신설)

②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2018. 02. 28. 신설)

제23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우리대학에서는 3개월 내지 1년 과정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은 우리대학에 설치된 학과 및 전공과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되,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를 한 후 시행한다.(2009. 5. 13. 개정)

제23조의2(시간제등록생 운영)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우리대학 재적생 및 성인학습자에게 재교육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등록생을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2009. 5. 13. 개정)

② 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2018. 02. 28. 개정)

③ 삭제

④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은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의 성적으로 선발하며, 모집단위별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시간제등록생 선발(성적) 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2009. 5. 13. 개정)

⑤ 시간제등록생으로 선발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수강신청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2009. 5. 13. 개정)

⑥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2009. 5. 13. 개정)

⑦ 기타 시간제등록생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2009. 5. 13. 개정)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받고, 우리대학에서 48학점(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한 경우 6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학칙 제31조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자에게는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018. 02. 28. 개정)

⑨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교원양성 및 의료법인 의료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의료기사, 약사법에 의한 약사 및 한의사,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는 제외한다.(2009. 5. 13. 개정)

⑩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우리대학 학생을 위해 개설된 교육과정의 범위내에서 개설하며, 수업운영은 정규과정과 동일하게 편성, 운영하고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한다.(2009. 5. 13. 개정)

⑪ 시간제등록생은 매 학기 단위로 선발하며, 선발인원은 당해 학년도 모집단위별(주·야간 전체) 입학정원의 100%까지 선발할 수 있다. (2009. 5. 13. 개정)(2013. 8. 26. 개정)(2014. 12. 10. 개정)

제23조의3(전공심화과정 운영) (2017. 02. 01 삭제)

제23조의4(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우리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009. 5. 13. 개정)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15학점 이상, 전공 45학점 이상, 총 80학점(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한 경우 교양 21학점 이상, 전공 54학점 이상, 총 120학점)이상을 인정받은 자
3.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한 경우 65학점) 이상인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 및 동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총18학점 이상인 자, 다만 본 규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연간 42학점(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② 우리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정규교육과정, 시간제등록 및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우리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학점인정서와 우리대학 학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9. 5. 13. 개정) (2016. 08. 31. 개정)

④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고등교육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본 규정에 의해 타 전공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2009. 5. 13. 개정)

제23조의5(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①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동시행령 제 58조 내지 제58조의4에 의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이후 관련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 한다.

③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의 제4항에 의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개설된 학과는 관련분야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모집할 수 있다.(2012. 6. 25. 개정)

④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2012. 6. 25. 신설)

제23조의6(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전문학사취득을 위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우선 활용하여 위탁 운영한다.(2011. 12. 12. 개정)

② 계약학과의 명칭은 계약에 따라 학과를 개설할 시점에 산업체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교육과정의 편성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는 유사학과의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운영하되, 계약학과의 특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요구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주문식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1. 12. 12. 신설)

④ 학기 및 수업일수, 수업연한, 졸업학점, 학사관리 등은 본 학칙과 대학의 제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계약 체결에 따라 학기 개시 최초 학기를 2학기부터 시작할 수 있다.(2011. 12. 12. 개정) (2015. 12. 23. 개정)

⑤ 수업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및 계절제수업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이어야 하고, 학교 이외에 계약관련 기관 및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이용하여 수업할 수 있다.(2011. 12. 12. 신설)(2018. 02. 28. 개정) 다만, 공동계약 및 제3자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2018. 02. 28. 신설)

⑥ 계약학과에 학생선발(편입학·재입학 포함)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산업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2011. 12. 12. 신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⑦ 학생선발은 본 학칙과 제 규정에 따르되, 특별전형에 의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제6항 1호의 경우 계약학과와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교육형 계약학과와 모집정원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리고 별도의 지원기관(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등)이 있는 계약학과와 학위 과정별 모집인원은 총장과 지원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2011. 12. 12. 신설)(2015. 12. 23. 개정)(2017. 02. 28. 개정)

⑧ 계약학과에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공동계약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하되, 제6항 1호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제6항 2호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2011. 12. 12. 신설) 다만, 일학습병행제 등 정부(공공기관을 포함한다)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준을 따른다.(2018. 02. 28. 신설)

⑨ 계약학과에 설치·운영기간은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2011. 12. 12. 신설)

⑩ 재학 중 학생이 구조조정, 권고사직 되거나 계약학과가 설치·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관련 학과에 소속시키며, 당해 계약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업이수,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우리대학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2011. 12. 12. 신설) (2016. 02. 22. 개정)

⑪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2011. 12. 12. 신설)

⑫ 기타 계약학과 학생선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2011. 12. 12. 개정)

⑬ 계약학과와 학과 및 모집인원은 [별표 4]와 같으며, 학칙 제4조의 정원과는 별도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한다.(2015. 12. 23. 신설)

⑭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과의 학위연계형 계약학과를 철치 운영할 수 있으며, 과정 운영시 교육과정은 현장훈련(OJT)과 현장외훈련(Off-JT)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며 운영 결과는 정규 학점으로 인정한다. (2016. 02. 22. 신설)

⑮ 일학습병행제 학위연계형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2016. 02. 22. 신설)

⑯ 교육과정은 산업체 등과 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을 반영하되,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7. 02. 28. 신설)

⑰ 대학은 운영위원회 또는 산업체와의 워크숍 등을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협의해야한다.(2017. 02. 28. 신설)

제23조의 7(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 운영) (2015. 12. 23. 삭제)

제23조의 8(평생학습중심 교육과정 운영) 성인학습자 전형을 위한 별도의 평생학습중심교육과정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2014. 12. 10. 신설)

제23조의 9(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대학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평생교육원에서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2016. 08. 31. 신설)

제23조의 10(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양성과정의 설치) (2017. 02. 28. 신설) ① 우리대학은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양성과정 설치학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11(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유니테크)과정 설치·운영) ① 본교의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이하 ‘유니테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학 내 유니테크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2018. 02. 28. 신설)

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2조, 고용노동부 고시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 규정’에 따라 유니테크과정 정원, 입학, 수업연한, 졸업 및 수수료 등 학사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8. 02. 28. 신설)

제24조(교과 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 실습, 실기, 체육은 1학기간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의 강의를 1

학점으로 할 수 있다.

- ② (2014. 12. 10. 개정) (2018. 02. 28. 삭제)
- ③ 졸업학점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 일반(일반선택)교과 및 기타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3. 2. 28. 개정)
- ④ 실무 기술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전공분야 이론과 실습을 통합한 다학점(6학점 내외)형태의 강좌를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개설할 수 있다. (2013. 8. 26. 신설)
- ⑤ 학생은 학점인정 신청 학점 제외 매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단, 별도 계약에 의하여 개설, 운영하는 계약학과 및 유니테크사업 참여학과 등의 학기당 개설가능 학점은 사업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4. 12. 10. 신설) (2018. 02. 28. 개정)

제24조의2(사회봉사활동의 학점인정) ① 비영리, 공익, 비정치적 기관이나 단체에서 봉사한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활동의 인정범위, 인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9. 5. 13. 개정)

제24조의3(국내·외 인턴십 및 해외 현장실습, 해외취업 연수과정 등의 학점인정) 고등교육법 제39조에 의하여 국내·외 각종 교육,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 및 연수, 현장실습 등은 소속 학과의 해당학기 지정 교과목 성적 이수율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 범위,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1. 12. 12. 개정)

제24조의 4(보건계열의 임상실습) ① 보건계열의 현장임상실습은 30시간 이상의 실습을 1학점으로 한다. (2009. 11. 2. 신설)

② 삭제 (2013. 2. 28. 삭제)

제25조(수업) ①매학기 수강신청 및 개설, 폐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업개시 전에 총장이 별도로 정하고 08:00부터 22:4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강좌 개설학과의 수업시간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9. 5. 13. 개정)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방송, 통신, Internet 등)수업 등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2009. 5. 13. 개정)

③ 원격(방송, 통신, Internet 등)수업의 진행은 정규 교육과정 성적평가 기준을 적용, 운영할 수 있다. (2010. 12. 1. 신설)

④ 동일 모집단위내 주간과 야간과정이 동시에 개설된 경우 학생들의 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주·야간 교육과정에 대하여 수강신청을 상호 변경하여 수강할 수 있다. (2013.4.19. 신설)

⑤현장 실무기술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동일 강좌내 분야별(이론, 실습 등) 전문교원을

추가로 배정하여 1강좌 2교수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2013. 8. 26. 신설)

제25조의2(공개강좌의 운영) 교양,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설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9. 5. 13. 개정)

제25조의3(재수강) 학업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미 이수한 과목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2009. 5. 13. 개정)

제25조의4(교원의 교수시간) 우리대학 교원의 책임강의 시간은 보직 및 직위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2009. 5. 13. 개정)

제25조의5(타교생 수강) 국내외 대학에서 재적중인 학생이 본교 개설강좌에 대하여 수강코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2018. 02. 28. 개정)

제25조의6(단기 집중수업 및 계절수업) ①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등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2010.12.01.개정)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단기 집중수업 및 계절수업 등은 4주 내외로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2010.12.01.개정)

제25조의7(현장실습 학기제) (2011. 12. 12. 신설)(2014. 12. 10. 삭제)

제25조의8(출석의무 및 출석인정) ①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한 전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2014. 12. 10. 신설)
② 학생은 질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2014. 12. 10. 신설)
③ 졸업예정자(전문학사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재학생 중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자)의 졸업학기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4. 12. 10. 신설) (2016. 11. 1. 개정)

제 8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6조(평가) ① 교과목에 대한 성적 평가는 주·객관식 시험 또는 과제평가 및 실험·실습·실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2013. 2. 28. 개정)(2013. 8. 26. 개정)

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성적등급은 F로 처리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2013. 4. 19. 개정)(2014. 12. 10. 개정) (2017. 02. 01 개정)

③ 학과 및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산업체가 요구하는 직무, 인성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학기당 1회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2013. 2. 28. 신설)

⑤ 졸업학기 조기 취업자 특례규정에 따른 취업자는 별도의 출석 및 성적인정 절차에 따라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2016. 11. 1. 신설)

제27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과목을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목의 성적평가 기준은 별도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현장실습 및 실험·실습·사회봉사과목 등에 있어서는 P(Pass)를 급제할 수 있다.

등급	배점	평점	등급	배점	평점
A+	100 ~ 95	4.5	C°	74 ~ 70	2.0
A°	94 ~ 90	4.0	D+	69 ~ 65	1.5
B+	89 ~ 85	3.5	D°	64 ~ 60	1.0
B°	84 ~ 80	3.0	F	59점 이하	0
C+	79 ~ 75	2.5	P	불계	

③ 추가시험 응시자의 성적은 B+ 까지, 졸업학기 조기취업에 따른 학점인정 신청자의 성적은 A° 까지 부여할 수 있다.(2016. 11. 1. 개정)

④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성적배점별 분포는 총장이 정한다.(2009. 5. 13. 개정)

제27조의2(학점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이를 우리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2014. 12. 10. 개정)

② 국내·외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현장 경험 등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 범위안에서 관련 전공교과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2011. 12. 12. 개정) (2014. 12. 10. 개정)

- ③ 편입학 학생이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과목과 학점은 우리대학의 별도 심의를 거쳐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이하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라 한다.)가 우리대학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강 절차 및 등록금 납부관련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2009. 5. 13. 개정)(2014. 12. 10. 개정)
- ⑤ 학점인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점 인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4. 12. 10. 신설)
- ⑥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평생학습활성화지원 사업 관련학과의 입학자는 우리대학 입학전에 선행학습(평생학습학위연계강좌, 산업체근무경력, 학습경험 등)을 이수한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기준학점의 1/4이내에서 특정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2014. 12. 10. 신설)
- ⑦ 기타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9. 5. 13. 개정)

제27조의3(특별학점인정) ① 학점 인정이 가능한(공인자격증 등)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관련 과목의 학점을 총장이 별도로 특별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2009. 5. 13. 개정)

② 특별학점은 최대 8학점(3년제는 12학점, 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6학점)까지 전문교과 등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2013. 2. 28. 개정)

③ 기타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9. 5. 13. 개정)

제28조(진급) 입학 후 학년의 진급은 학년도 단위로 진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입학을 2학기부터 들어온 학생은 기본 2개 학기를 이수한 이후 2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진급할 수 있다.)(2016. 08. 31. 신설)

제29조(성적의 정정 및 취소, 포기) ①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한다.

② 삭제(2014. 2. 28. 삭제)

제30조(학사경고) 성적 평가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할 수 있다. 그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2010. 12. 1. 개정)(2014. 12. 10. 개정)

제31조(졸업 및 수료)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2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4년제 학과와 제23조의 5에 의거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졸업을 위한 교양교과, 전공교과, 일반교과에 대한 졸업 기준학점은 아래와 같다.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비고
				수업연한 2년	수업연한 1년	
교양교과 (5~30%)	4~23	6~34	7~42	3~18	1~6	
전공교과 (70~95%)	54~73	81~109	98~133	42~57	14~19	교직 포함
일반교과 (0~20%)	0~15	0~23	0~28	0~12	0~4	
계	77	115	140	60	20	

(2018. 02. 28. 개정)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학위증서 대신 수료증을 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년	2년제	3년제	4년제
1학년	36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2학년	77학점 이상	77학점 이상	77학점 이상
3학년		115학점 이상	115학점 이상
4학년			140학점 이상

단, 졸업유급 등 졸업학점 부족으로 추가 등록하여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 2학기 개시전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2014. 12. 10. 개정)(2013. 2. 28. 개정)(2017. 02. 28. 개정)

③ 1997년 이전에 졸업한 자(1992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자부터 적용)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우리대학에서 2년제 학과의 경우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57조 규정에 의한 경우 65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에 의하여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된 자에게는 우리대학 총장이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학위번호는 정규과정과 구별하여 정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다.(2009. 5. 13. 개정) (2016. 08. 31. 개정)

⑤ 각 전공 및 학과별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및 명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0. 12. 01. 개정)(2015. 12. 23. 개정)

⑥ 간호학과(4년제)는 졸업인정 시험을 통해 인정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4. 12. 10. 신설)

제31의2(공동학위, 복수학위) 국내외 타 대학과의 공동학위·복수학위는 교류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1의3(명예학위의 수여) ① 우리대학에 학적을 두었다가 제적된 자로서 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명예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학위 증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의4(학위 수여의 취소) ① 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2014. 12. 10. 신설)

② 학위수여 취소 해당학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4. 12. 10. 신설)

1. 고등교육법 제50조(법 제5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2.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사학위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에 대한 학사학위

제31조의5 (교육만족도 조사) ① 대학이 제공하는 유·무형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2017. 02. 28. 신설)

② 교육만족도 조사의 대상,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2017. 02. 28. 신설)

제32조(유급)제32조(유급)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유급 할 수 있다.(2009. 5. 13. 개정)(2017.2. 01. 개정)(2017. 02. 28. 개정)

제 9 장 학생활동

제33조(학생회 조직) ①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활동을 배양하기 위하여 우리대학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2009. 5. 13. 개정)

② 우리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34조(학생회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35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9. 5. 13. 개정)

제36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온게시물의 무단 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제37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학년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2009. 5. 13. 개정)

②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2009. 5. 13. 개정)

제38조(학생활동) ① 정규교과 외 교육 및 단체활동에 대하여 학생의 자율적 선택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2016. 08. 31. 신설)

② 학생 활동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있어서는 사전계획서를 제출하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2009. 5. 13. 개정) (2016. 08. 31. 개정)

1. 교내외 단체 활동(동아리, 단합회, 오리엔테이션, MT 등)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첨부 및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③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2016. 08. 31. 신설)

④ 단체활동 중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운영정지·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16. 08. 31. 신설)

제39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9. 5. 13. 개정)

제40조(처벌) 본 장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 10 장 규율과 상벌

제41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중견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2조(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강의 담당교수 또는 지도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진료기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8. 02. 28. 개정)

제43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2009. 5. 13. 개정)

제44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2009. 5. 13. 개정)

1. 우리대학 학칙을 위반한 자
2. 무계출 결석이 4주년을 초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44조의2(성희롱 예방)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 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9. 5. 13. 개정)

제 11 장 등 록 금

제45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시기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학점중 일부학점을 이수하지 못해 졸업하지 못한 자는 등록시기에 별도로 정한 신청학점별 수업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험 또는 실습비,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2016. 08. 31. 개정)

③ 납부한 수업료 등 등록금의 반환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1. 12. 12. 개정)

④ 가정형편이 곤란하거나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항으로 등록이 어려운 경우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연기 및 분납제를 실시할 수 있다.(2009. 5. 13. 개정)

⑤ 시간제등록생의 수업료는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별,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⑥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2010. 12. 1. 신설)

⑦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할 때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10. 12. 1. 신설)

⑧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고등교육법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0. 12. 1. 신설)

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2013. 2. 28. 신설)

제46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보훈대상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2010. 12. 1. 개정)

제 12 장 장 학 금

- 제47조(장학금)** ① 총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0. 12. 1. 개정)
1. 학업성적이 평균 B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학업성적이 평균 C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극빈한 자
 3. 1,2항이외에 총장이 따로 정한 세부사항에 해당되는 자 (2010. 12. 1. 신설)
- ②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2010. 12. 01. 개정)
- ③ 장학금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0. 12. 01. 신설)

제 13 장 교 무 위 원 회

제48조(구성) 삭제

제49조(소집 및 심의) 삭제

제49조의2(교무위원회) ① 교무행정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2017. 02. 28. 개정)

② 교무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9. 5. 13. 개정)(2017. 02. 28. 개정)

제49조의3(기타위원회) ① 우리대학의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종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9. 5. 13. 개정)

제 14 장 직 제

제50조(교직원) 우리대학에 총장, 부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과 직원, 학과사무원, 행정사무원을 둘 수 있다.(2018. 02. 28. 개정)

제51조(직제) ① 우리대학에 산학협력단, 입학처, 교무처, 학생복지처, 기획행정처, 취업지원처, 대외협력처, 국제교류처, 예산조정실을 둔다.(2012. 6. 25. 개정)(2015. 12.

23. 개정)(2018. 02. 28. 개정)

② 산학협력단 및 각 처에는 단·처장을 두고, 각 단·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산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2009. 5. 13. 개정)

③ 산학협력단 및 각 처의 사무분장은 별도로 정한다.

제 15 장 부속(부설) 기관

제52조(부속기관) ① 우리대학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2018. 02. 28. 개정)

1. 지식정보원(전산원, 도서관)
2. 생활관
3. 언론사
4. 교수학습지원센터
5. NCS지원센터
6.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2018.02. 28. 삭제)
7. 보건실
8. 현장실습지원센터
9. 창업교육센터
10. 기업교류촉진센터
11. 대학일자리센터(2018. 02. 28. 개정)
12. 국가시험지원센터(2018. 02. 28. 신설)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52조의2(부설기관) ① 우리대학에 다음의 부설기관을 둔다.(2014. 12. 10. 개정)(2015. 12. 23. 개정)

1. 평생교육원
2. 보육교사교육원
3. 어린이집
4. 학생생활상담소
5. 장애학생지원센터

②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52조의3(산학협력단) ① 우리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업무를 관장하는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을 둔다.(2014. 12. 10. 개정)

②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정관을 가진 법인으로 한다.

제52조의4(산학협력단의 조직)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

다.(2009. 5. 13. 개정)

② 산학협력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창업보육센터, 전자파(EMC)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둔다.(2010. 12. 1. 개정)

제52조의5(산학협력단의 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9. 5. 13. 개정)

제52조의6(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 ① 우리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2011. 12. 12. 개정)

② 위 제1항의 법률에 근거하여 그 명칭을 GU “커피니”, “아동발달 상담센터”, “G-STEAM 창의인성연구소”, “디자인센터”, “자동차정비센터”라 한다.(2014. 2. 28. 개정)(2015. 4. 30. 개정)(2018. 07. 06 개정)

③ GU커피니는 교외(경북 구미시 봉곡로 166)에 설치하고, 우리대학 호텔조리전공, 제과제빵전공과 연계하여 음식업(한식, 양식 그 외 기타음식, 음료, 제과제빵 도소매 등)을 사업내용으로 한다.(2014. 2. 28. 개정)(2018. 07. 06 개정)

④ GU아동발달 상담센터는 교지(경북 구미시 야은로 37)에 설치하고, 우리대학 언어재활과, 작업치료과, 물리치료과와 연계하여 서비스업(언어, 운동, 감각, 심리 재활서비스, 등)을 사업내용으로 한다.(2014. 2. 28. 신설)

⑤ G-STEAM 창의인성연구소는 교지(경북 구미시 야은로 37)에 설치하고, 우리대학 유아교육과와 연계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교재교구 개발 및 판매 등)을 사업내용으로 한다.(2014. 2. 28. 신설)

⑥ GU디자인센터는 교지(경북 구미시 야은로 37)에 설치하고, 우리대학 비주얼게임컨텐츠스쿨과 연계하여 디자인컨텐츠 개발 및 판매 등의 용역제공을 사업내용으로 한다.(2015. 4. 30 신설)(2018. 02. 28. 개정)

⑦ GU자동차정비센터는 교지(경북 구미시 야은로 37)에 설치하고, 우리대학 자동차기계전공과 연계하여 자동차 서비스업(정비 및 유지관리 등)을 사업내용으로 한다.(2018. 07. 06 신설)

제52조의7(학교기업의 현장실습)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총 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2008.3.11. 개정)

② 현장실습교육은 30시간을 이수할 경우 1학점으로 인정한다.(2008. 3. 11. 개정)

③ 현장실습교육은 방학기간에 4주, 160시간 이상을 수행한다.(2013. 4. 19. 신설)

- ④ 현장실습교육은 최소 2학점이상으로 개설하여 이수한다.(2013. 4. 19. 신설)
- ⑤ 기타 학교기업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13. 4. 19. 개정)

제52조의8(학교기업의 회계처리 등) ① 학교기업의 회계는 분리하여 처리하며, 수입금은 학교의 재정운영상 필요에 따라 건전하게 사용하도록 한다.(2008. 3. 11. 개정)

② 기타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08. 3. 11. 개정)

제52조의9(공학기술교육 혁신센터) (2018. 02. 28. 삭제)

제52조의10(교수학습지원센터) ① 교수법 개발, 교수학습 지원 및 상담, 교육매체 제작 지원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2012. 6. 25. 신설)

②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2012. 6. 25. 신설)

③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에 따른다.(2012. 6. 25. 신설)

제52조의11(NCS 지원센터) ① NCS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과 NCS 개발 유보분야의 직무 분석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NCS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2014. 2. 28. 신설)

② NCS 지원센터 센터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2014. 2. 28. 신설)

③ NCS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NCS 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2014. 2. 28. 신설)

제52조의12(기업교류촉진센터) ① 산업체와의 교류협력 촉진 및 네트워크 확대, 사업정보 및 인적자원 교류 촉진 등을 위하여 기업교류촉진센터를 둘 수 있다.(2015. 12. 23. 신설)

② 기업교류촉진센터 센터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2015. 12. 23. 신설)

③ 기업교류촉진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업교류촉진센터 규정에 따른다.(2015. 12. 23. 신설)

제52조의13(대학일자리센터) ① 대학내 분산되어 있는 취업지원 업무를 통합관리운영 및 진로지도, 취업지원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대학일자리센터를 둘 수 있다.(2015. 12. 23. 신설)(2018. 02. 28. 개정)

② 대학일자리센터 센터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2015. 12. 23. 신설)(2018. 02. 28. 개정)

③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2015. 12. 23. 신설)(2018. 02. 28. 개정)

- 제52조의14(지식정보원)** ① 지식정보원 산하에 전산원과 도서관을 둔다.(2016. 02. 22. 신설)
- ② 지식정보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2016. 02. 22. 신설)
- ③ 전산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첨단 정보기술을 수용한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대학구성원의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안정적이고 신속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2016. 02. 22. 신설)
- ④ 도서관은 도서 및 학술정보자료의 수집, 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2016. 02. 22. 신설)
- ⑤ 도서관의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 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서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과 기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6. 02. 22. 신설)

- 제52조의15(학생생활상담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상담, 고충처리를 통하여 대학생들과 면학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2012. 6. 25. 개정)
- ② 학생생활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2012. 6. 25. 개정)
- ③ 학생생활상담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2012. 6. 25. 개정)

- 제52조의16(현장실습지원센터)** ① 재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2012. 6. 25. 신설)
- ②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2012. 6. 25. 신설)
- ③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2012. 6. 25. 신설)

- 제52조의17(창업교육센터)** 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 창업 준비 등의 효과적인 창업지원을 위하여 창업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2012. 6. 25. 신설)
- ② 창업교육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2012. 6. 25. 신설)
- ③ 창업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업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2012. 6. 25. 신설)

- 제52조의18(국가시험지원센터)** ① 학생들의 각종 국가시험 응시 지원을 위하여 대학내 국가시험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2018. 02. 28. 신설)
- ② 국가시험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2018. 02. 28. 신설)
- ③ 국가시험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시험지원센터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2018. 02. 28. 신설)

제 16 장 학칙 제·개정절차

제5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 총장은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2008. 1. 10. 신설)

제54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2011. 12. 12. 개정)

제55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우리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08. 1. 10. 신설)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2008. 1. 10. 신설)

제56조(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08. 1. 10. 신설)

제5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개정안의 공포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이 공포한다.(2011. 12. 12. 개정)

제 17 장 보 칙

제58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09. 5. 13. 개정)

제59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산업체에 근무중인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산업체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2009. 5. 13. 개정)

제60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총장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우리대학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2009. 11. 2.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하되,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2009. 11. 2. 신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9. 11. 2. 신설)

제60조의2(자체평가위원회 등) ① 총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둘 수 있다. 단,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대학발전위원회에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2009. 11. 2. 신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9. 11. 2. 신설)

제60조의3(평가결과의 공시) 총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2009. 11. 2. 신설)

제61조(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총장은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을 위하여 대학에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2009. 11. 2. 신설)

제61조의2(장애학생지원센터) ①총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 등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않거나 장애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인원 이하인 경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둬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2009. 11. 2. 신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2009. 11. 2. 신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2009. 11. 2. 신설)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2009. 11. 2. 신설)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009. 11. 2. 신설)

5.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2009. 11. 2. 신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9. 11. 2. 신설)

제61조의3(편의제공 등) 총장은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2009. 11. 2. 신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2009. 11. 2. 신설)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2009. 11. 2. 신설)

3. 취학편의 지원(2009. 11. 2. 신설)

4. 정보접근 지원(2009. 11. 2. 신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2009. 11. 2. 신설)

제61조의4(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대학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6. 02. 22. 신설)

② 위원회는 지식정보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식정보원장이 된다. (2016. 02. 22. 신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6. 02. 22. 신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학과개편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학과가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학과에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공업경영과 →산업경영과)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교육과정 배정 배점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1992학년도와 1993학년도에 입학한 자 중 입학과 동시에 휴학한 학생과 1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휴학한 학생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1992학년도와 1993학년도에 입학한 자 중 1학년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휴학한 학생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정비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자동차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정원외 입학자 교양과목 학점인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199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학과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명칭변경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전자통신과 → 정보통신과, 원예과 → 시설원예과, 여성교양과 → 비서행정과)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구미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구미1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학과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9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명칭변경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전자과→전자정보과, 산업경영과→산업경영정보과, 섬유과→신소재섬유과, 자동차과 →차량기계과, 세무회계과→세무회계정보과, 판매관리과→마케팅경영과)

부 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학과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명칭변경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전기과를 전기전공으로, 차량기계과를 차량기계전공으로, 기계설계과를 기계설계전공으로, 전자정보과를 전자정보전공으로, 전자계산과를 컴퓨터정보전공으로, 정보통신과를 정보통신전공으로, 산업디자인과를 산업디자인전공으로, 신소재섬유과를 섬유패션전공으로, 인테리어건축과를 인테리어건축전공으로, 생활체육과를 생활체육전공으로, 식품과학과를 식품과학전공으로, 피부미용과를 피부미용전공으로, 세무회계정보과를 세무회계정보전공으로, 마케팅경영과를 마케팅경영전공으로, 비서행정과를 비서행정전공으로, 시설원예과를 환경원예과학과로, 생음악과를 음악과로 명칭변경)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학과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명칭의 계열/학과 또는 전공 소속으로 본다.(전기전공을 전기과로, 차량기계전공을 차량기계과로, 기계설계전공을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로, 컴퓨터그래픽스전공을 컴퓨터 그래픽스과로, 생활체육전공을 생활체육과로, 식품과학전공을 식품과학과로, 피부미용전공을 피부미용과로, 세무회계정보전공을 세무회계정보과로, 마케팅경영전공을 마케팅경영과로, 사회복지전공을 사회복지과로 명칭변경)
3. 비서행정(전공)과의 폐과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

한 자는 유사학과로의 전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되 기 취득한 학점은 학장이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2.(식품학 전공 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2000학년도 식품과학전공 입학생으로서 식품학 및 영양학과 관련된 소정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는 식품학 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학과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명칭의 계열/학과 또는 전공 소속으로 본다.(전기과를 컴퓨터응용전기전공으로, 차량기계과를 자동차기계공학전공으로,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를 컴퓨터응용기계설계전공으로, 전자정보전공을 인터넷전자정보전공으로, 섬유패션전공을 컴퓨터패션디자인전공으로, 컴퓨터그래픽스과를 컴퓨터그래픽스전공으로, 식품과학과를 식품과학전공으로, 환경원예과학과를 원예조경전공으로, 세무회계정보과를 세무회계정보전공으로, 마케팅경영과를 마케팅경영전공으로, 관광과를 관광전공으로, 비즈니스영어과를 비즈니스영어전공으로, 음악과를 음악전공으로, 생활체육과를 생활체육전공으로,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전공으로, 아동복지과를 아동복지전공으로, 산업경영과를 인터넷산업경영과로 명칭변경)
- 3.(수업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수업연한 연장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또는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학과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명칭의 계열/학과 또는 전공 소속으로 본다.(컴퓨터응용기계설계전공을 컴퓨터응용설계전공으로, 컴퓨터정보전공을 컴퓨터전공으로, 정보통신전공을 정보통신네트워크전공으로, 컴퓨터패션디자인전공을 패션

디자인전공으로, 식품과학전공을 식품과학과로, 원예조경전공을 원예조경과로 명칭변경)
3.(식품학 전공 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2002학년도 식품과학전공 입학생으로서 식품학 및 영양학과 관련된 소정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는 식품학 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학과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명칭의 계열/학과 또는 전공 소속으로 본다.(컴퓨터응용설계전공을 컴퓨터응용기계설계전공으로, 인터넷전자정보전공을 디지털정보미디어전공으로, 컴퓨터전공을 컴퓨터멀티미디어전공으로, 관광전공을 관광호텔외식경영전공으로, 비즈니스영어전공을 관광경영통역전공으로, 식품과학과를 호텔조리영양전공으로 명칭변경)
3. 산업디자인전공 및 패션디자인전공자 중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전과규정에 의거하여 타과로 전과하여 졸업할 수 있다.
- 4.(식품학 전공 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2004학년도 호텔조리영양전공 입학생으로서 식품학 및 영양학과 관련된 소정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는 식품학 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학과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명칭의 계열/학과 또는 전공 소속으로 본다.(정보통신네트워크전공을 정보통신계열로, 디지털정보미디어전공 및 컴퓨터멀티미디어전공을 컴퓨터정보미디어계열로, 컴퓨터응용기계설계전공을 기계설계전공으로,

관광영어통역전공을 비즈니스영어전공으로, 관광호텔외식경영전공을 호텔관광전공으로, 세무회계정보전공을 세무회계전공으로, 호텔조리영양전공을 호텔조리계열로, 생활체육전공을 사회체육계열로, 피부미용전공을 피부미용과로, 원예조경전공을 원예조경과로, 애완동물뷰티전공을 애완동물관리과로, 음악전공을 음악과로 명칭변경)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6월 21일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학과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명칭의 계열/학과 또는 전공소속으로 본다.(컴퓨터정보미디어계열을 컴퓨터정보전자계열로, 기계설계전공을 기계계열로, 외국어관광계열을 외국어계열로, 단 외국어관광계열의 호텔관광전공은 호텔관광과로, 인터넷산업경영과는 인터넷산업경영계열로, 특수건설장비전공은 특수건설장비과로, 원예조경과는 원예산업계열 원예조경전공으로 명칭변경)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식품학전공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2005학년도 호텔조리계열에 입학한 식품영양 전공 소속학생은 식품학 및 영양학과 관련된 소정의 전공과을 이수한 자는 식품영양학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명칭의 계열/학과 또는 전공소속으로 본다.(전기과는 전기에너지계열로, 식품영양과는 웰빙식품계열로 아동복지과는 특수보육계열로 소속변경, 음악과 재학생으로서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타 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
3. (식품학 전공 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2009학년도 웰빙식품계열로 입학한 식품영양전공 소속학생 중 식품학 및 영양학과 관련된 소정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호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식품영양학 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명칭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소속으로 본다.(정보통신계열은 정보통신과로, 컴퓨터정보전자계열은 컴퓨터정보전자

과로, 전기에너지계열은 전기에너지과로, 자동차산업계열은 자동차기계공학과로, 기계계열은 기계공학과로, 부동산금융과는 부동산·금융과로, 외국어계열은 비즈니스외국어과로, 특수보육계열은 특수보육과로, 호텔조리제빵계열은 호텔조리제빵과로, 웰빙식품계열은 웰빙식품과로, 경호스포츠계열은 경호스포츠과로, 원예산업계열은 조경과로, 호텔관광계열은 호텔관광과로 소속변경)

3. (식품학 전공 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2010학년도 및 그 이전 웰빙식품계열로 입학한 식품영양전공 소속학생중 식품학 및 영양학과 관련된 소정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는 『식품위생법』 및 보건복지부령 제 18호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식품영양학 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또한, 2011학년도 및 그 이후 식품·조리학부 웰빙식품과로 입학한 식품영양전공 소속학생중 식품학 및 영양학과 관련된 소정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 역시 『식품위생법』 및 보건복지부령 제 18호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식품영양학 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명칭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소속으로 본다.(부동산·금융과는 글로벌금융자산과로, 보건의료서비스과는 보건의료행정과로 소속변경)
3. 노인보건복지과와 방송코디네이션과의 폐과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로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전과규정에 의거하여 타과로 전과하여 졸업할 수 있다.
4. 제54조의 공고기간은 본 개정학칙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명칭의 계열(학부), 학과 또는 전공소속으로 본다.(컴퓨터그래픽스과는 디지털디자인과로, 산업경영과와 마케팅경영과는 산업경영계열로, 사회복지과와 특수보육과는 복지·보육계열로, 비즈니스외국어과, 호텔관광과, 세무회계과, 글로벌금융자산과와 디지털샵마스터과는 글로벌관광금융계열로 소속변경)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 8.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 2.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 12.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 4.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 12.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 02.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수업연한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3년제 간호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못하여, 2016학년도부터 개설된 4년제 간호학과 학재로 복학하는 학생은 3년제로 입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4년제 간호학과로 졸업한다. 단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2019학년도 말까지 별도의 교육과정에 의해 3년제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학기술교육인증 운영학위명 (2011. 12. 12. 개정) (2015. 12. 23. 삭제)

[별표2]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2018. 02. 28. 개정)

학과명	입학정원		비 고
	주간	야간	
사회복지학과	15	35	
유아교육학과		30	
작업치료학과		15	
물리치료학과		15	
간호학과		20	
언어재활학과		15	
건강뷰티학과		40	
호텔조리학과		19	
기계자동차공학과		20	
비주얼게임컨텐츠학과		20	
특수건설기계공학과	30		EMU
헬기정비공학과	30		EMU
산업경영학과		15	
합 계	75	244	

[별표3]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종별 (2015. 4. 30. 개정) (2015. 12. 23. 삭제)

[별표4] 계약학과 편성 및 정원 (2018. 02. 28. 개정)

학과명	입학 정원	입학 구분	학위명	유형	비고
기계공학과	25	신입학	기계전문학사	재교육형	일학습병행제 계약학과
세무회계정보과	10	신입학	세무회계정보전문학사	재교육형	일학습병행제 계약학과
전자공학과	10	신입학	전자공학전문학사	재교육형	일학습병행제 계약학과